소프트웨어학과 및 컴퓨터공학과 학사과정 졸업평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의 지침으로 정한 졸업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사과정의 원전공 및 복수전공 학생들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졸업평가 대상 및 이수 내용

제2조(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졸업 예정자
- 2.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졸업 예정자

제3조(이수 내용) 졸업평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수해야 한다.

- 1. 2017년도 전에 입학한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 :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이수해야 한다. (제2, 3절 참고).
- 2. 2017년도 이후 입학한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이수해야 하며(제2, 3절 참고), 이와 더불어 인턴십을 수행해야 한다. (제 6절 참고).
- 3. 2022년도 이후 입학한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이수해야 하며(제2,3절 참고) 이와 더불어 인턴십(제6절 참고), 산학협력프로젝트(제7절 참고), 1만라인프로젝트(제8절 참고)수행해야 한다.
 - 단, 순수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학생의 경우 산학협력프로젝트 졸업평가는 면제한다.
- 4. 2019년 2학기 전에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에 진입한 학생 :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이수해야 한다. (제2, 3절 참고).
- 5. 2019년 2학기 이후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에 진입한 학생 : 캡스톤설계톤프로젝트 교과목(학수번호: SWE3028)을 이수해야한다. (제5절 참고).

제1절 지도교수 선정

제4조(지도교수 선정) 연구논문·작품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 3학년 2학기(6학기) 학기 중 지정 기간 내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소속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청해야 하며, 배정을 받아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진행 한다. 지도교수 신청 후 4학년 1학기부터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수행한다.
- 2. 2019년 2학기 전에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에 진입한 재학생 : 3학년 2학기(6학기) 학기 중 지정 기간 내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소속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청해야 하며, 배정을 받아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진행한다. 지도교수 신청 후 4학년 1학기(7학기)부터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수행한다.
- 3. 조기졸업 희망자 : 졸업시기 2개 학기(1년) 전에 지도교수 신청과 배정을 받아 수행하며 일반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수행한다.
- 4. 1개 학기 이상의 인턴, 파견 교환학생 : 일반학생과 동일한 지정 기간 내 지도교수 신청과 배정을 받고 동일한 절차로 수행한다. 파견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4학년 1학기 휴학 예정 학생 : 휴학 전 지도교수 신청해서 배정받아야 한다.

제5조(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8학기) 중간보고서 제출기한(학기 초)

전까지 지정양식(지도교수변경원)에 지도교수님 서명 확인 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연구작품 수행

제6조(수행 기간) 연구작품의 수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팀 구성) ① 연구작품인 경우, 1팀당 1~4인으로 구성, 유형의 결과물(직접적인 제작 결과물로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 제출되어야 한다.

- ② 팀 구성 시 구성원들은 졸업 시기가 동일해야 하며, 팀원 전원이 1년 연구작품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팀 구성을 허용한다.
- ③ 연구작품 수행 중 팀원이 휴학할 경우 나머지 팀원들은 지도교수님과 계속 수행하며 휴학생은 복학 후 지도교수님께 잔여기간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작품 지도) 지도 학생의 연구작품 지도 및 작품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해당 지도교수에게 일임한다.

제9조(작성 분야 선정) ①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작품 주제를 정하고 연구작품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진행하다.

- ② 연구작품의 주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희망 시 졸업학기(8학기) 중간보고서 제출기한(학기 초) 까지 지정 양식(지도교수확인서) 및 변경된 제안서를 교수님 서명 확인 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연구수행 도중 팀 변경 및 작품·논문 상호변경을 원할 경우 졸업학기(8학기)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 전 (학기 초)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지도교수 확인서를 기한 내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연구작품 금지 주제 : 라인트레이서, 6족 로봇 등 Kit-oriented 작품들

제10조(제출 자료) ① 제출 자료는 사전에 지도교수 검토를 거쳐 제출(업로드)해야 하며, 팀원 전체가 각자 제출해야 한다.

- ② 지정 기간에 미제출 시 평가 불가하며, 제출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약서, 제안서(7학기)
 - 2. 중간보고서(8학기)
 - 3. 최종보고서(8학기)
 - 4. 작품 발표회용 요약 포스터 PPT 파일(8학기)
 - 5. GitHub(지도교수 상시 확인 시 제출)
 - 2017년 1학기부터 연구 수행하는 자는 GitHub를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은 주 1회 이상으로 한다. 단, 2016년 2학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기존 연구 노트를 계속하여 사용한다.
- ③ 제출 자료는 2012년 2학기 지도교수 선임 학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선임한 학생은 연구 노트를 제출한다.

제11조(제출자료 유의사항) ① 제출 자료의 서명은 연구논문·작품 시스템에서 온라인 서명으로 진행한다.

- ② 지도교수는 학생이 업로드 한 제출 서류를 온라인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제출 서류가 반려될 경우 지정 기한 내에 연구 보완하여 재 업로드 해야 하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
- ④ GitHub / 연구 노트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논문/작품을 진행하는 동안의 모든 연구 내용을 기록한다.
 - 팀이라 하더라도 수행 학생 개인별로 연구 내용을 기록한다.
 - 정기적으로 지도교수님의 확인(서명 등)을 받아야 인정한다.

제3절 연구논문 수행

제12조(수행 기간) 연구논문의 수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팀 구성) ① 연구논문인 경우, 개인별 수행이 원칙이나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경우 1팀당 최대 2 인까지 가능하다.

- ② 팀 구성 시 구성원들은 졸업 시기가 동일해야 하며, 팀원 전원이 1년 연구논문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팀 구성을 허용한다.
- ③ 연구논문 수행 중 팀원이 휴학할 경우 나머지 팀원들은 지도교수님과 계속 수행하며 휴학생은 복학 후 지도교수님께 잔여기간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연구논문 지도) 지도 학생의 연구논문 지도 및 논문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해당 지도교수에게 일임한다.

제15조(작성 분야 선정) ①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논문 주제를 정하고 연구논문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진행한다.

- ② 연구논문의 주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희망 시 기(8학기) 중간보고서 제출기한(학기 초)까지 지정 양식(지도교수확인서) 및 변경된 제안서를 교수님 서명 확인 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연구수행 도중 팀 변경 및 작품·논문 상호변경을 원할 경우 기(8학기)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 전(학기 초) 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지도교수 확인서를 기한 내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연구논문 금지 주제 : 라인트레이서, 6족 로봇 등 Kit-oriented 작품들

제16조(제출자료) ① 제출 자료는 사전에 지도교수 검토를 거쳐 제출(업로드)해야 하며, 팀원 전체가 각자 제출해야 한다.

- ② 지정 기간에 미제출 시 평가 불가하며, 제출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약서, 제안서(7학기)
 - 2. 중간보고서(8학기)
 - 3. 최종보고서(8학기)
 - 4. 작품 발표회용 요약 포스터 PPT 파일(8학기)
 - 5. GitHub(지도교수 상시 확인 시 제출)
 - 2017년 1학기부터 연구 수행하는 자는 GitHub를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은 주 1회 이상으로 한다. 단, 2016년 2학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기존 연구 노트를 계속하여 사용한다.
 - 6. 외부학회 발표 증빙(8학기)
 - 제1저자 또는 제2 저자로 발표해야 함
- ③ 제출 자료는 2012년 2학기 지도교수 선임 학생부터 적용되며 이전 학생은 연구 노트를 제출한다.

제17조(제출자료 유의사항) ① 제출 자료의 서명은 연구논문·작품 시스템 온라인 서명으로 진행한다.

- ② 지도교수는 업로드 한 제출 서류를 온라인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③ 제출 서류가 반려될 경우 지정 기한 내에 연구 보완하여 재 업로드 해야 하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
- ④ GitHub / 연구 노트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논문/작품을 진행하는 동안의 모든 연구 내용을 기록한다.
- 팀이라 하더라도 수행 학생 개인별로 연구 내용을 기록한다.
- 정기적으로 지도교수님의 확인(서명 등)을 받아야 인정한다.

제4절 연구논문·작품 심사 및 평가

제18조(심사 절차) 연구논문·작품 심사는 지도교수 심사와 연구논문·작품 발표회로 구성된다.

제19조(연구논문·작품 발표회) ①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연구논문·작품 발표회에 해당 학기 대상 모든 연구 논문/작품을 발표해야 한다. 연구논문·작품 발표회 미참석 시 지도교수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재심대상사로 선정되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지도교수 심사에서 우수작 추천 받은 학생들에 대하여 교내 연구논문·작품 발표회에서 우수작 심사를 할 수 있다.
- ③ 우수작 심사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우수작 심사 교수가 학생 연구내용 및 발표 수준에 따라 시상 수준을 결정한다.
- ④ 우수작 심사 기준 및 시상 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지도교수 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지도 학생은 학과별 지정된 규격·양식 등에 맞추어 동계 졸업 기준해당 학년도 11월 말(하계 졸업자는 5월 말)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구논문·작품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 ② 지도교수 심사는 각 지도교수가 실시하며 지도교수별 우수작 1팀 추천 가능하다. 필요의 경우 재심사 (부적격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지도교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지도교수가 완성도, 창의성, 참여도, 논문(작품)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에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0점 이상), F(59점 이하)로 구분하여 학생별로 평가한다.
 - 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 연구논문 Pass/Fail 사례는 <별표1>에 따른다.
- ④ 연구논문을 수행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국내 및 국제학회가 주관하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 연구논문 수행 학생이 제1저자 또는 2저자, 지도교수가 공저자로 발표.
 - 팀으로 발표했을 경우 모든 팀원이 공저자여야 함

제21조(재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지도교수 심사에서 재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팀은 정해진 기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심사 학생은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연구를 보완해야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재심사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기에 따로 진행되며 위원회에서 지정한 재심사 평가 교수가 학생의 보완된 연구내용 및 발표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 불합격한 자는 2차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2차 재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재심사에 불합격을 받은 학생은 연구를 보완하여 2차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 ② 2차 재심사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기에 따로 진행되며 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수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
- ③ 2차 재심사에 불합격을 받은 학생은 최종탈락자로 지정하여 졸업 평가를 유보하며 연구를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지도교수 심사를 다시 받고 연구논문·작품 발표회 재참가를 해야 한다.

제23조(예외 사항) 예외적으로 위원회 전원이 동의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졸업 평가 요건을 충족시킨 것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4조(세부 사항) ① 연구논문·작품발표회 및 졸업 평가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매학기 초에 따로 정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 및 지도 학생 선정, 연구논문 지도, 연구논문 제출, 졸업 평가 심사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절 캡스톤설계프로젝트 교과목 수강

제25조(수강시기) 졸업하기 전까지 캡스톤설계프로젝트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 및 평가) ① 지정교과목 캡스톤설계프로젝트(학수번호: SWE3028)를 B학점(평점평균:3.0)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B학점(평점평균:3.0) 이상 미 취득 시 졸업 평가는 불합격으로 간주하며 재수강은 가능하지만 다른 구제 방법은 없다. 제27조(예외사항) 사전에 졸업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구논문 또는 연구작품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논문 또는 작품 수행할 수 있으나 진행 절차 및 기간 등 예외 없이 원전공생과 동일하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6절 인턴십

제28조(수행 기간 및 기관) 인턴십 수행 기간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 설립한 민간기업, 연구소, 또는 공공기관 : 전일제의 경우 4주 이상, 파트타임의 경우 16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한다.
- 2. 본교에 설립되어있는 연구소(센터) 또는 연구실: 6개월 이상 수행해야 한다.
 - ① 근무 장소
 -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의 연구실로 한정한다. 단, 교환 학생으로 인한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교환 학생 대상 학교 연구실도 인정 가능하다. (타 단과대학 연구실 또는 교환 학생 대상 학교 연구실에서 수행할 경우, 사전에 인턴십 신청서를 작성하여 졸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타 대학에서 수행한 인턴십은 인턴십 졸업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근무 내용 및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연구실 인턴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내용과 방식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최소 근무 시간: 학기 중 4개월 (월 80시간 이상)
 - 방학 중 2개월 (월 160시간 이상)
- * 근무 내용 및 기간은 교환 학생 대상 학교 연구실도 동일 하게 적용한다. 단, 연구실 인턴 기간을 단일 연구실에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연구실 인턴 기간을 합산하여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근무 방식

원칙적으로는 연구실 출근을 기본으로 하되, 지도교수 허락하에 재택으로 근무 가능하다.

- ④ 연구실 인턴십 기간 중 정기적으로 지도교수에게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3. 심화R&D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의 연구실 지도교수와 심화R&D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인턴십(교내 연구실) 수행으로 인정한다.

단, 2번의 교내 연구실 인턴십 수행 조건과 동일하게 수행할 경우만 졸업요건으로 인정한다.

- 4. 기타 인턴십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 기타 기관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턴십 수행 전 졸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제출 자료) 제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업 및 실습기관
- 출근부 (실습기관 작성)
- 수행 평가표 (실습기관 담당자가 학생을 평가)
- 인턴십 주간 보고서
- 인턴십 종합 보고서
- 인턴십 수행 확인서
- 2. 교내연구실
- 출근부 (실습 교내연구실 작성 / 1개월마다 근무 시간 작성)

- 수행 평가표 (교내연구실 지도교수가 학생을 평가)
- 인턴십(교내연구실) 월간 보고서
- 인턴십(교내연구실) 종합 보고서
- 인턴십(교내연구실) 수행 확인서

제30조(평가)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수행 기관 및 연구실에서 60점 이상의 평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을 시, 인턴십 미수행으로 본다.
- 2. 수행 내용이 IT 및 SW 교육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1조(인증 기간)

- 1. 매년 동계 졸업예정자는 2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까지, 하계 졸업예정자는 1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까지, 인턴십 수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인턴십 인증은 수행한 년도에만 인정이 가능하다.

제7절 산학협력프로젝트

제32조(프로젝트 참여 및 수행 기간) 프로젝트 참여 및 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모집 시기 : 매년 3월 ~ 4월 중으로 모집을 시행 한다.
- 2. 선발 방법 :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산학교수가 평가 후, 선발 시행
- 3. 수행 시기: 매년 4월 또는 5월 ~ 12월 까지
- 단, 모집 시기 및 수행 시기는 한달 전 후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제33조(학점 이수) 산학협력프로젝트 참여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1. 수강 신청 :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참여하는 학생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직권배정)
- 2. 산학협력프로젝트 참여 학생은 소프트웨어학과 교육과정의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1학점)을 반드시이수 하여야 한다. (SWE2017 산학협력프로젝트1, SWE2018 산학협력프로젝트2, SWE2025 산학협력프로 젝트3 중 1과목)

제34조(평가) 프로젝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시행 한다.

1. 산학협력프로젝트 : 교과목 미 이수시(학점 미 취득)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출 서류)

- 1. 산학협력프로젝트
 - ① 프로젝트 진행 중 :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등 총 2건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프로젝트 종료 후 : 졸업하는 학기에 성적증명서(학점 취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1만라인프로젝트

제36조(수행 지정 과목) 1만라인프로젝트 수행 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베이스개론(학수번호 : SWE3003), 운영체제(학수번호 : SWE3004)

컴퓨터구조개론(학수번호: SWE3005), 컴퓨터네트웍개론(학수번호: SWE3022)

프로그래밍언어(학수번호: SWE3006)

제37조(수강 시기) 졸업하기 전까지 1만라인프로젝트 수행 지정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38조(심사 및 평가)

- 1. 1만라인프로젝트 수행 지정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B학점(평점평균:3.0)이상 이수해야한다.
- 2. B학점(평점평균:3.0)이상 미 취득 시 졸업 평가는 불합격으로 간주하며 재수강은 가능하다.

제39조(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 1. 졸업하는 학기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료생이 될 경우,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으니 그 이전에 2과목 이상을 B학점(평점평균:3.0) 이상 취득해야 한다.
- 단, 초과 학기 대상자는 제외

제3장 개정

제32조(개정) 학과장은 학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절 인턴십 시행일은 2020년 1학기 종강 이후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지침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지침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지침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논문 Pass/Fail 사례

Pass 사항

- Hard / Software Integrated Project / Recycling Engineering
- 필요한 부속품을 새로 구입한 것보다는 못 쓰는 컴퓨터/가전제품 등의 부품 활용 시
-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1) 주제의 창의성, 팀원들의 참여도 등이 높고,
 - (2) 연구 작품의 의의를 충분히 살렸다고 인정될 경우
 - (3) 충실한 GitHub / 연구 노트 작성 등으로 참여도, 성실성을 인정받은 경우

Fail 사항

- 팀을 구성하였을 때 조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원들의 참여가 미비할 경우
- 처음 주제 선정이 잘못되어 중간에 주제를 바꾼 후 작업의 완성도, 창의성 및 기술 수준이 떨어질 경우 (이 경우 1년 동안 논문/작품을 수행한 다른 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함)
- 연구 작품의 완성도가 높더라도 주제가 4학년이 하기에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 라인트레이서, 6쪽 로봇 등의 금지된 주제를 약간만 변형시킨 경우
- 지정된 기한을 지나 (주제변경, 작품 ↔ 논문 상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연구 부정행위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연구논문/작품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